

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6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: 거창군의회 의장

2016. 1. .

제 목: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 회
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
합니다.

붙 임: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끝.

발의자: 이성복 의원, 강철우 의원, 표주숙 의원, 권재경 의원,
김종두 의원, 최광열 의원, 형남현 의원, 이흥희 의원,
변상원 의원, 박희순 의원, 김향란 의원.

서명날인서

□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직 위	성 명	날 인	비 고
의 장	이성복		
부의장	강철우		
의회운영위원장	표주숙		
총무위원장	권재경		
산업건설위원장	김종두		
의 원	최광열		
의 원	형남현		
의 원	이홍희		
의 원	변상원		
의 원	박희순		
의 원	김향란		

의안번호	제2016 - 호
의결연월일	2016. 1. . (제215회 임시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발의자	이성복 의장 외 10명
발의연월일	2016. 1. .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~
----------	-------

발의일자	2016. 1. .
발 의 자	이성복 의장 외 10명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「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20일로 정해 놓고 있으나 2016년 7월 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겹치면서 의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6월 10일로 변경.

○ 전년도 예산결산검사는 조기 실시 가능.

(출납폐쇄기간이 다음 해 2월에서 12월 말로 당겨짐)

2. 주요내용

○ 집회일 변경(안 제4조)

-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 ⇒ 6월 10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

(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4조

나. 예산 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집행부 의견조회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6월 20일”을 “6월 10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집회일)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6월 20일</u>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·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.</p>	<p>제4조(집회일) ① ----- <u>6월 10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